

特輯 大學의 財政현況 ① 財政 지원과 大學財政

產業體의 지원과 大學財政

趙 星 河
(高麗大 經營學科)

1. 序

최근 私立大學 財政의 어려움이 社會的 問題로 제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으로 모든 分野에 있어서 우리 社會가 國際的으로 開放化됨에 따라 大學教育의 質的 向上은 치열한 國際競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일은 누구도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現재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3/4 이상을 私立大學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私立大學 財政의 곤란은 學校의 운영을 담당하는 學校法人이나 大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現在만의 社會的 問題가 아닌 우리 社會와 民族의 未來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私立大學의 教育與件은 國·公立大學에 비하여 현저하게 劣悪한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高等教育의 質的 向上来 위하여는 私立大學 財政의 곤란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私立大學의 경우 敷地와 校舍 등 物的 施設뿐만 아니라 教員數 등에 있어서 國·公立大學에 비하여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표 1〉 참조) 현재의 國·公立大學 수준의 教育與件을 갖추는 것도 私立大學에게는 적지 않은 財政 壓迫要因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私立大學의 財政 곤란 현상은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貨幣의 增加와 積

〈표 1〉 國·公·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 여건 비교(1989년)

구 분	교 사 면적 (m ²)	교 지 면적 (m ²)	교원 수(명)
국·공립	26.2	80.5	1/25.0
사립	4.3	57.9	1/35.6

*주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89, pp. 76~77, 88~89, 90~91.

〈표 2〉 학교법인의 주요 계정(결산 및 예산액)

구 분	1988 (결산)	1989 (예산)	증 감
총 운 영 수 입	18,214	27,792	9,578
총 운 영 지 출	12,367	19,842	7,475
순 운 영 수 지 차	5,847	7,950	2,103
유동부채 입금	146	0	△146
(장기)부채입금	83	194	111
총부채입금	229	194	△35
유동부채상환	124	0	△124
장기부채상환	127	87	△40
총부채상환	251	87	△164
적립금인출	273	511	238
적립금적립	506	267	△239

*주 : 문교부, 문화통계연보, 1989, pp.770~771.

立金引出의 增加로 요약될 수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9년도에는 前年度에 비하여 負債 債還額이 164 억 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借入은 35 억 원밖에 감소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로 私立大學 法

人이 지게 되는債務는 1년 동안 총 129 억 원이增加하였을 뿐만 아니라 賦積立金의 純引出(引出額—積立額)도 急增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大學의 納入金 引上에 대한 學生 및 學父母들의 강한 반발이 있고 學生 受容能力이 限界에 이른 상황에서는 현재와 같이 學生 納入金 依存度가 큰 私立大學 財政構造의 好轉可能性을 극히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私立大學의 財政 문제는 근본적인 改善 조치가 없이는 解決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私立大學의 代替的 收入源으로 寄附金, 國庫補助 또는 學校債 發行 등이 심각히 고려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私立大學의 財政問題 解決의 한 方案으로서 企業으로부터의 寄附金에 관하여 그 必要性, 그 현장에 대한 制約點 및 改善方法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企業은 오늘날 우리 社會에 있어서 가장 中中적인 機關이며 高等教育의 가장 중요한 受惠者라는 의미에서 그들의 大學에 대한 寄與가 다른 어떠한 때보다도 要求되고 있다.

2. 受益者負擔原則과 大學財政

오늘날 흔히 “大學의 主인이 누구인가?”라는 質問을 들게 된다. ‘學園 自律化’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學校의 主人 가운데 하나인 學生이 大學運營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들게 된다. 患者가 의료 기관인 病院의 主인이 아닌 것과 같이 學生이 教育機關인 學校의 主인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 學校法人(財團)도 學校의 經營을 책임지고 있는 法的 實體이지만, 學校運營으로부터 얻어지는 惠澤을 排他的으로 享有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企業의 所有主와는 달리 學校의 主人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늘날 社會에 있어서 大學의 주된 機能은 教育·研究 및 社會奉仕로 이해되고 있다. 教育이란 大學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社會가 필요로 하는 高級人力을 양성하여 社會에 배출하는 것이다. 大學의 教育機能은 社會의 人的 資源의 開發, 즉 入學 당시보다 向上된 知識·情緒 및

能力을 지니는 卒業生을 배출하는 것으로, 특히 오늘날과 같이 높은 水準의 技術人力을 필요로 하는 社會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大學의 研究機能은 새로운 知識이나 文化를 창조하는 일로 앞으로 그 重要性은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물론 企業이나 社會의 研究機關의 存在는 大學의 研究 기능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할 수 있는 요소로 이해될지 모르나, 가장 풍부하고 광범위한 分野의 研究人力을 보유하고 있고 大學院의 運營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知識을 探究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屬性 때문에 어떠한 時代에 있어서도 大學의 研究 기능은 社會의 가장 中中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大學의 社會奉仕 기능이란 大學이 속한 社會의 問題解決이나 發展에 기여하는 것으로 教育이나 研究에 부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大學이 教育 및 研究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는 施設이나 人力 또는 組織이 社會問題 해결이나 發展에 도움이 되게 活用되어 社會에 공헌하는 것이 大學의 社會奉仕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大學의 주된 機能을 살펴 보면, 한 社會에 있어서 大學의 受惠者는 직접 大學에서 교육을 받는 學生뿐만 아니라 社會 全體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大學의 教育機能을 한정해서 볼 때에도 大學에서 교육을 받는 學生뿐만 아니라 大學이 배출해 내는 高級人力을 사용하는 社會의 모든 分野도 간접적으로 大學의 受惠者가 되는 것이며, 大學의 研究結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社會의 維持나 發展에 필요한 知識이나 技術을 開發하는 것으로 社會의 광범위한 분야에 惠澤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大學의 受惠者는 大學에 재학하고 있는 學生뿐만 아니라 거의 全體 社會 구성원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現在의 社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世代까지도 大學의 受惠者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運營에 소요되는 財源을 현재 大學에 在學하고 있는 學生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受益者負擔原則의 그릇된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在學生은 大學의 教育 기능의 주된 受惠者이기는 하나, 그들이 大學財政의 전부를 負擔한다는 것을 公平하다고 할 수 없다. 前述한 바와 같이 大學의 기능 수행의 受惠者들은 在學生 외에도 많다. 또 이들이 받을 수 있는 大學 機能의 혜택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在學生에 대한 校財政의 지나친 依存은 受益者負擔原則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社會에 대한 大學의 기여는 國·公立과 私立 大學 사이에 差異가 없다. 國·公立大學은 公益을 위한 社會人을 양성하고, 私立大學은 私利만을 위한 社會人을 양성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國·公立大學의 研究만이 國家·社會를 위하여 필요한 知識이나 技術을 開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日本과 같이 私立大學에 적지 않은 國庫支援을 하거나 또는 獨逸(西獨)의 경우와 같이 國家가 大學財政의 거의 全部를 負擔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3. 企業의 大學財政 支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社會에 있어서 大學은 社會의 廣範而分野에 중요한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社會의 發展, 즉 未來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날의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企業은 社會를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機關(institution)으로 이해되고 있다. 企業은 社會의 經濟的 資源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社會問題의 解決이나 社會發展에 가장 중요한 手段을

(표 3) 사립대학 자금 조달 원천(1988 학년도)

구 分	납 입 금	전입 기부금	기타운영수입	자 산 처 분	부 채	적립금 인출	계	
校 費	금 액 구성비	544,603 43.78	103,920 8.35	111,682 8.98	38,264 3.08	396,200 31.85	49,248 3.96	1,243,917 100
기 성 회 비	금 액 구성비	261,401 70.96	31,504 8.55	1,082 0.29	3,394 0.92	49,315 13.39	21,697 5.89	368,395 100
합 계	금 액 구성비	806,004 49.99	135,424 8.40	112,764 6.99	41,658 2.59	445,515 27.63	70,945 4.40	1,612,312 100

*주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9, pp.782~783.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社會의 중요한 公器인 大學의 問題 解決이나 發展을 위하여 企業의 기여는 적지 않다고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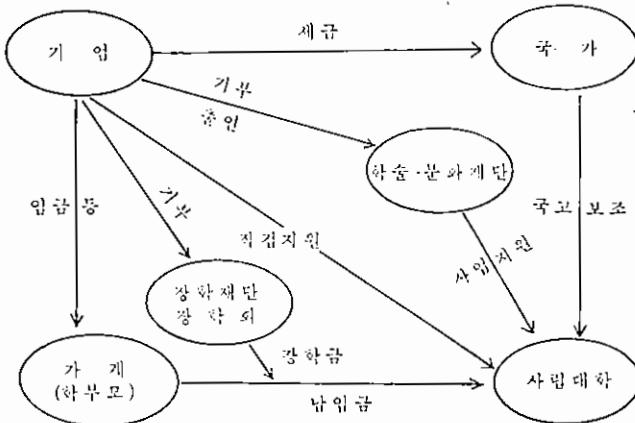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企業은 大學의 가장 큰 受惠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企業은 大學으로부터 企業經營에 필요한 高級人力과 先進知識이나 技術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大學, 특히 私立大學 財政問題 解決에 있어서 企業의 寄與(寄附)는 매우 중요한 期待를 받게 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企業은 利潤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企業經營者들의 모든 意思決定은 企業利益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大學에 대한 企業의 財政的 寄與는 大學의 機能 수행에 따른 혜택을 어느 特定企業(즉, 寄附企業)만이 獨占의으로 享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우리 社會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企業이 얻을 수 있는 大學으로부터의 혜택은 대부분 닥연한 無形的인 것이며, 매우 不確實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企業이 직접 大學에 財政의으로 寄與하는 일은 극히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私立大學의 1988 학년도 資金調達源泉 중 轉入 및 寄附金의 비중은 8.4%이며, 이중 企業으로부터의 寄附金은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私立大學에 대한 企業의 財政 지원은 뒤의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접적 기부 외에도 간접적인 것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企業이 내는 稅金 중

(금액 : 100 만 원, 구성비 : %)

〈표 4〉 사립대학에 대한 기업의 기여



일부는 國庫補助의 형태 또는 學術·文化財團 등에 대한企業의 기부는 私立大學의 여러 가지 學術 및 文化活動에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私立大學에 대한企業의 직접적 기부는 ① 私立大學 法人에의 基本財產 출연, ② 學校의 施設費·研究費·教育費 등의 무상 지원, ③ 研究用役, 委託教育用役 또는 出版物 廣告 등 구체적 서비스의 代價 지급, ④ 大學에 대한 特惠 제공, 예컨대 大學에 대한 製品販賣價格의 割引이나 差等率 적용 등의 4 가지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學校法人的 基本財產 出捐

이는 學校法人을 지배하고 있거나 관련 있는企業이 學校法人에 基本財產을 출연하는 것으로 포함제철(企業)이 浦項工大에 출연한 것은 이러한 형식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學校法人에 출연된 재산은 그 法人の 결정에 의하여 教育用이나 收益用으로 운용될 수 있다.

2) 施設費·研究費·教育費 등의 無償支援

企業은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장학재단, 學術·文化 재단 등과 마찬가지로 學校法人에 대하여도 직접 기부금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1987년 11월에改正된 租稅減免規制法¹⁾에 의하여企業은 일반 기부금의 한도에 구애됨이

없어 學校法人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은 全額 損費로 認定되고 있어企業의 學校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前述한 바와 같이 大學의 機能은 社會에 광범위하게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企業의 大學에 대한 財政的 支援을 권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大學의 서비스 代價支給

企業은 大學에 研究 용역, 從業員의 委託教育 용역 또는 大學에서 刊行되는 出版物(學術雜誌나 新聞 등)에의企業廣告 계재 代價로 金錢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企業과 大學 사이의 去來 성격을 지니는 것이나, 大學의 機能 수행에 필요한 財源이企業으로부터 조달된다는 점에 있어서企業의 大學에 대한 支援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4) 大學에의 特惠 供與

大學에서 研究 및 教育用으로 사용되는 機器, 材料나 能力, 用水 등에 대하여 그 공급企業이 일반적인 價格 또는 料率보다 낮은 水準을 적용함으로써 大學을 지원할 수도 있다. 컴퓨터의 판매 가격에 있어서 大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教育用 割引(educational discount)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方式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大學에 대한企業의 特惠 조치는 製品이나企業

1) 租稅減免規制法 제49조 제3항(1987년 11월 28일 개정).

의 廣告 효과를 기대하는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大學을 支援하기 위한 목적의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大學이 사용하는」 電力, 에너지에 적용되는 「料率은」 일반 「產業用에」 비하여 「현저히」 不利하다는 것은前述한 바, 「大學의 社會的重要性」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妥當한 것이라 할 수 없다.

4. 大學經營의 改善

企業의 私立大學에 대한 기여는前述한 바와 같이 그 가능성은 매우 크나, 지금까지의 實績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 주된 原因으로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企業은 自體의 施設擴張을 위하여 資本을 축적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으며, 社會的奉仕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또한 1987년도 말까지는 企業의 大學에의 기부는 일반 寄附·接待費의 범위에 포함되어 制限을 받아 왔기 때문에 기부 행위는 稅制上의 혜택을 받을 여지가 극히 적었던 것도 큰 원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企業으로부터의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없었던 原因 중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大學 자체의 經營上問題라 할 수 있다. 私立大學이 企業들로부터 기부금을 유도하는 데 장애가 되는學校經營上의 주요한 問題點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學校法人的 非公開

우리나라에 있어서 많은 私立大學은 特定個人 또는 企業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접하여 大學이 그러한個人이나 企業의 私有物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러한個人이나 企業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企業들도 하여금 大學에 財政的寄與를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되어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私立大學에의 기부금은 學校法人이나 學校의經營者와個人의 관계가 있는 극히 限定된 企業들로부터의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私立大學에 대한 社會的不信風潮

우리나라의 私立大學 중 상당 부분이 한국 전쟁 후 특수한 환경에서 급속히 성장하거나 그러한 추세 속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社會的認識이 좋지 않은 편이다. 教育을 위한 基礎的投資를 충분히 하지 않고 출발한 大學은 충실했던 준비 없이卒業生을 量產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大學의 지나친 擴張은 '學園財閥' 또는 '學園非理' 등 부조리한 면을 산출해 냈다. 따라서 私立大學에 대한 우리 社會의 일반적認識은 현재에 있어서도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며, 이러한 현상은 企業으로 하여금 大學에의 寄與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經營能力의 不足

지금까지 大學의 經營能力은 엄격한 政府當局의 지시와 統制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스스로 財政問題를 포함한 學校經營上의 問題를 解決할 能力を 갖추지 못하고 있는 大學이 많다. 즉, 大學財政은 매년 政府當局에 의하여 결정되는 學生定員數 및 기타 算算編成指針 및 基準 등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大學經營者는 對政府로비를 통한 學生定員 증가와 登錄金의 引上을 위한 노력에 치중해 왔고, 다른 源泉으로부터의 財源調達방법은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大學財政의 納入金依存度를 높이게 되었으며, 오늘날 私立大學의 財政問題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講義 위주의人事制度

현재 우리나라 私立大學에 있어서 教員에게는 일정 시간의 講義가 責任으로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教員의 定員도 講義時間과 기초로 簿定되고 있기 때문에 大學의 研究나 社會奉仕 등을 위한餘力은 극히 적어 企業을 상대로 제공할 수 있는 大學의 서비스가 企業으로부터 財政的支援을 이끌어 낼 만한 水準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私立大學에 있어서 教員은 과중한 講義부담으로 研究나 社會奉仕에 기여할餘裕가 없다. 또한 이러한體制에 있어서는 教授가個人

的으로 수행하는企業으로부터의研究用役수행의代價는教授개인의收入이될뿐大學財政에는도움을주지못하게되는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같이 지금까지 우리나라私立大學은學生들로부터의納入金에그財政을크게의존하는안이한經營에安住해왔다
고볼수있다. 그러나大學의學生受容能力의限界,高級人力의需要를초과한供給등의여전에따른學生定員增加의限界와學生納入金引上의어려움때문에私立大學의財政難은더이상學生納入金에만의존할수없는단계에이르렀다. 따라서앞으로의大學財政問題解決을위하여는學生納入金依存度를낮출수있는方案이강구되지않으면안될것이다.

企業은大學의가장중요한受惠者일뿐만아니라經濟的資源을가장많이지배하고있는組織이라는점에있어서大學財政問題해결을위하여企業의기여는매우중요한代案이된다.
그러나진술한바와같이企業은利益의極大化라는본질적목적을갖는組織이기때문에이러한목적과관련된企業의要求를充足시킬수있도록大學의경영이이루어지지않으면企業으로부터의무조건적인財政支援은기대할수없을것이다.

企業의大學에의寄附를유도하기위하여는전술한바와같은私立大學자체의經營上문제해결이先決課題가된다. 그중요한것을살펴보기로하자.

1) 學校法人의公開

學校法人이특정個人이나企業의私有物로인식되는경우에는그러한개인이나기업과관계가없는일반企業社會에대하여는學校에의寄附가이루어지는대制約이되기때문에學校法人을공개하여私立大學이社會의公器라는인식을화산시키지않으면안된다.私立大學이특정個人이나企業의私利를위하여運營된다면,그大學과관련있는한정된개인이나기업으로부터의財政的援助는기대할수있으나,그大學과특수한관계가없는일반企業의기여에는制約이되는것이다.

2) 大學의弘報

우리나라私立大學은그成長과정에서一部大學의잘못으로인하여社會적으로좋은인식을받지못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社會의좋지않은인식은企業의大學支援을制約하는요인이되고있음은물론이다. 따라서企業의私立大學에의기여를유도하기위하여는大學의本質,機能,能力및애로사항등에관한내용을社會에적극적으로알려야할필요가있다.企業이社會에대하여寄附할수있는金額은限定되어있는반면,企業의기여를기대하는分野는장학법인,社會福祉法人등私立大學외에도많이있기때문이다. 따라서企業의私立大學에대한寄附는社會事業次元의것이아닌企業의유지와發展을위한필수적인것이라는事實을알릴필요가있다.

3) 企業의要求充足을위한프로그램開發

企業의목적달성을위하여大學이제공할수있는서비스는적지않다.社員의委託教育,共同研究또는企業弘報에도움이되는碩座教授制(chair professorship)등의프로그램들은企業의財政的기여를유도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私立大學은이와같은產學協同을위한多樣한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開發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는현재와같은講義 중심의教授任用을지양하고,研究와社會奉仕機能을고려하는制度의보완이필요하다. 즉,예컨대研究教授制度,教授研究年制度등을도입하여大學의研究및社會奉仕能力을擴充하고,그것을통하여企業의requirement를充足시킬수있는여러가지프로그램을開發·遂行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4) 專門經營者的養成

현재우리나라대부분의私立大學은專門家가아닌일반教授들에의하여經營되고있기때문에복잡한환경에大學이적응해나아가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더구나대부분의大學에있어서學校行政은순환보직제도에따라보직교수들에게一時적으로맡겨지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에專門的managementability의축적에는制約을

반계 된다.

특히 企業으로부터의 財政的 支援을 얻어내기 위하여는 企業의 內容을 이해하고 企業經營者들과 계속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學校 經營者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一時的으로 學校 行政을 맡고 있는 補職教授들에게는 長期的인 노력은 필요로 하는 企業으로부터의 寄附를 유도하는데 좋은 成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結 言

이상에서 私立大學의 財政問題 해결을 위한 企業의 기여 가능성과 문제점 및 學校經營의 改善方案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企業은 오늘날 우리 社會에 있어서 經濟的 資源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組織이라는 점에서 大學財政問題의 해결을 위한 寄附의 可能性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企業은 大學의 가장 중요한 受惠者라는 점에서 企業의 大學에의 支援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大學에의 企業의 寄附는 1988년 말에 改正·시행되고 있는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해 國家적으로 권장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實績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다. 물론 企業은 그 利益을 기초로 한 稅金을 國家에 納付하여 國家·社會에 寄與하고 있으나, 大學에의 寄附는 전액이 損費로 인정받아 法人稅를 減免시키는 효과가 있어 國

家的으로 커져되고 있다. 企業이 税金으로 納付한 金額은 다시 國庫補助의 형태로 私立大學에 기여할 수 있으나, 國家行政의 경직성이나 非效率性的 측면에서 企業의 直接的 寄附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私立大學의 현재 財政問題는 물론 그동안 大學에 관련된 政策當局의 施策에서도 그 原因을 찾을 수 있으나, 私立大學 자체의 經營上 잘못이 더 큰 원인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學生 納入金에 지나치게 依存하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企業으로부터의 財政의 寄附의 유도는 가장 現實的인 大學財政 문제 해결을 위한 代案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私立大學은 學校法人의 公開와 學校 經營體制의 刷新을 통하여 企業의 寄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大學의 專門經營者를 양성하여 企業의 產學協同의 requirement에 持續的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企業은 利益을 추구하여야 하는 組織이기 때문에 經濟的 ability이 있는 경우에도 利益을 減少시키는 寄附行爲를 무한정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企業이 私立大學을 위하여 財政的 支出을 正當화할 수 있는 誘因을 적극 개발하는 것이 私立大學에의 企業의 寄與를 增大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